

□ 『생명연구』 원고 투고 및 심사 안내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정기 발간하는 『생명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연구자께서는 다음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 투고 요령

1) 원고의 접수 및 발간: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연 4회 발간함(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2) 원고의 종류

- ① 논문 : 생명 존중의 세계관과 생명문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양식의 창조를 주제로 한 학제 간 학술 연구논문
- ② 서평: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생명 관련 저서에 관한 평.
- ③ 논문평: 최근 2년 이내에 발표된 생명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논문에 관한 논쟁적인 평.
- ④ 에세이: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에세이

3) 분량

- ① 논문은 한글(2010이상)로 25매 내외로 작성하되, 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25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 ② 서평, 논문평 및 에세이는 한글(2010이상)로 5매 이내로 작성한다.

4) 투고

- ① 원고는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에 접수한다. 논문 접수는 '회원 가입 신청' -> '로그인' -> '원고 접수' 의 순서로 진행된다.
- ② 심사 일정상, 해당 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간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5) 원고 접수 및 문의

- ① 원고 접수 홈페이지 : <https://soganglifecult.jams.or.kr>
- ② 문의 : 02-705-8216 / lifecult@sogang.ac.kr

2.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의 구체적인 순서

- ① 논문 제목
- ② 성명 (소속을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 ③ 국문초록: 주제분류 (3개 이내), 주제어 (4개 이상 6개 이내), 요약문 (한글 500(±50)자 또는 A4 1/2매 내외) 포함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영문초록: 논문제목, 성명 (소속은 성명 아래), Subject (영문, 3개 이내), Key words (영문, 4개 이상 6개 이내), Summary (영문 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포함.
- ⑦ 부록(필요한 경우)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순서를 적용한다.

2) 원고의 세부 편집 양식: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소프트웨어(한글 2010 이상, .hwp)로 작성해야 하되, 한자와 외국어는 필요시 괄호 속에 병기한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논문 제목’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6, 진하게.
- ② ‘저자’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 ③ 저자의 ‘소속’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 ④ ‘부’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4, 진하게.
- ⑤ ‘장’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2, 진하게.
- ⑥ ‘절’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1, 진하게.
- ⑦ ‘항’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10, 진하게.
- ⑧ ‘본문’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 크기 10,
- ⑨ ‘주석’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5.
- ⑩ 본문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 ⑪ 주석 문단모양: 내어쓰기 11.9, 줄간격 145, 정렬방식 혼합.
- ⑫ 용지설정 :
 - 용지 종류 : 사용자 정의 폭 194, 길이 263
 - 용지 여백 : 위쪽 22, 머리말 13, 왼쪽 27, 오른쪽 27, 아래쪽 25, 꼬리말 0
- ⑬ 참고문헌 : 글자모양: 휴먼명조, 글자크기 9.

3) **공동연구:** 주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 김OO, 주저자.
 ** 홍OO, 교신저자.
- ③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 ④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연구비 지원 논문 또는 학위 논문 관련 표기

- 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OO년도 OOOO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OO년도 OOOO의 연구용역보고서 “OO”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필자의 OO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논문 요약문(초록) 작성 요령

- ① 논문 요약문은 반드시 작성하여 수록한다.
 - ② 논문의 요약문은 주제 분류, 주제어(혹은 주요어), 요약문 본문으로 구성된다.
 - ③ 요약문의 본문은 500(±50)자 분량으로 작성하고, 투고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 ④ 본 학술지는 학제 간 연구지이므로, 주제 분류는 투고자 본인의 해당 전공 분야의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분류 주제의 수는 세 개 이내로 한다.
 - ⑤ 주제어는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 주제, 인물 등을 선정하여 4-6개로 한다.
 - ⑥ 주제 분류어, 주제어, 요약문 본문은 반드시 국문과 외국어로 함께 작성한다.
 - ⑦ 서평 및 논문평은 해당 사항 없음.
- ※ 국문/외국어 초록 작성 시 아래의 예와 같이 작성한다.

예)

주제분류	법철학, 의료법학
주제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치료(중단), 암관리법, 회복(불가능성)
요약문	본 연구는...

Subject	philosophy of science, modern philosophy
Key words	Causation, Regulative use of understanding, Analogies of Experience, Laws of the Nature
Summary	Though Kant's theory of causation is ...

6) 본문 작성 요령

- ① 글자 모양 : 휴먼명조, 글자 크기 10, 장편 98, 자간, -9
- ② 문단 모양 : 첫줄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 혼합
- ③ 본문 항목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I . II . III. /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④ 본문의 내용 중 직접 인용은 “ ”로, 간접인용이나 강조 부분은 ‘ ’나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다. 인용문 중 생략 부분은 문장 일부 생략 시 … 부호를 문장 전체 생략 시 (…) 를 사용한다.
- ⑤ 외래어 표기는 필요시 병기한다. 이 때 한글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 ⑥ 기타 편집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요령에 따른다.

7) 주석 작성 요령

- ① 인용 주석은 반드시 해당 면에 내각주로 처리한다.
- ② 일반적인 약정에 따라 괄호 안에 저자명, 해당 저서 또는 논문의 출판연도,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출판연도와 페이지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 페이지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이종위(2014: 62)은…, 예 2) … (이종위, 2014: 62).
- ③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 1) Freund(2006, 67-69)는… 예 2) … (Freund, 2006: 67-69).
- ④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 예) 손진분과 한부모(2007: 45-60)은... , ... (손진분 · 한부모, 2007: 45-60)
Griffin와 Soskolne(2013: 769-774)은... , ... (Lincoln and Guba, 1985)
- ⑤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 · 내각주 모두 “외”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거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로 표기한다.
- 예) 본문: 한인영 외(2005: 251)는... , ... (한인영 외, 2005: 251).
본문: Neugarten et al(1996)은... , ... (Neugarten et al., 1996).
- ⑥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년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예) (홍백의, 2005; 김진욱,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 ⑦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⑧ 본문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추가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각주 등은 외각주로 작성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작성 요령

- 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논문 맨 뒷부분에 붙인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 참조된 문헌만 수록하며, **한글 문헌 → 한문 문헌 → 외국 문헌 → 신문기사/인터넷 자료 순**으로 열거한다. 수록 순서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에 따른다.
- ② 일반적인 약정에 따라 참고문헌은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동양어권 저서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저서명』, 발행처의 순서로,

예) 강영안, 1998, 『자연과 자유사이』, 문예출판사.

동양어권 논문일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저널명』, 권 내지 호수: **페이지**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이종위, 2014, 「도덕경에 나타나는 여성성의 생명력과 특징들」, 『생명연구』, 32: 59-88.

서양어권 저서일 경우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저서명(이탤릭체), 발행장소: 발행처.

서양어권 논문일 경우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논문명”, 저널명(이탤릭체), Vol(No): 페이지.

예) Allen, K., 1998, “Essential Concepts of Addiction for General Nursing Practice”,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3(1): 1-13.

- ③ 역서일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저자명(성, 이름), 발행연도, 옮긴이 옮김, 『역서명』, 발행처.

- 옮긴이를 기록하되 한글일 경우 ○○○ 옮김 으로, 한자일 경우 ○○○ 譯 으로, 서양어권일 경우 trans. ○○○ 으로 기록한다.

- ④ 인터넷 문서일 경우는 저자명, 발행년도, 「문서제목」, 사이트 주소 (검색일: 연월일) 로 표기한다.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8, 「Mental Causation」,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ntal-causation/>. (검색일: 2019.02.05.)

- ⑤ 신문이나 일반 저널의 기사인 경우 신문명이나 저널명은 < >표시 안에 넣어준다.

예1) <한국경제>, 발행연도, 「기사 제목」, 00년 00월 00일 00면

예2) <동아일보>, 1961, 「언도를 받고있는 (右부터)文(문)용채 · 조규진 · 윤우현 · 장일순 피고」,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검색일: 2018.12.10.)

- ⑥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⑦ 학술대회발표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⑧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⑨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9) 영문초록 및 프로필의 작성 기준

- ① 영문 초록의 제목은 휴먼명조(글자크기 15)로 작성하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로 기입한다.

- ②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을 표기한다.

예) Kang, Sun Kyoung

(Sogang University)

- 10) 투고자의 사전 요청이 없는 한, 원고는 편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형식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1) 발간일 2개월 이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대상으로 1월, 4월, 7월, 10월에 각각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투고 논문 당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 논문 심사를 위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발표회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발표 시의 논평자를 포함하여 2인의 심사단을 구성한다.
- 3)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내용 적합성 : 생명 존중의 세계관과 생명문화,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양식의 창조 등 본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이어야 한다.
 - ② 창의성: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지와 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③ 논리성 :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적인 형태의 주장이 합당한 논거와 더불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용어 사용이 일관되어야 하고, 주장, 논거, 관점 개념 등이 명료하게 표현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 ④ 중요성: 해당 주제가 생명 및 생명 현상과 관련하여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 ⑤ 전문성: 해당 연구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해당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관련 문헌을 충분히 숙지한 것이어야 한다.
- 4) 본 학술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은 2008년 3월 2일자로 제정된 본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 5) 게재가 결정되면, 해당 투고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가 발간되는 즉시 2부를 투고자에게 우송하며,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수(5부 이하)를 추가 증정할 수 있다.

4. 게재논문 저작권 및 양도

- 1)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속한다.
- 2) 『생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최종논문 투고 시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연구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함으로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3) 『생명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될 논문의 저작권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한 『생명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상기한 항목들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5) 제출된 투고 원고 및 전송 파일은 반환되지 않는다.

5. 게재

- 1)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20만 원, 개인 연구는 10만 원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과 관련하여 기준 분량인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 당 오천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6. 연구윤리

- 1) 『생명연구』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생명윤리』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단, 한시적으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를 생명윤리심의(IRB)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자료(패널 등)를 활용한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7. 부칙

- 1)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차 개정: 2011년 11월 23일

2차 개정: 2012년 1월 18일

3차 개정: 2015년 7월 20일

4차 개정: 2019년 2월 19일

5차 개정: 2019년 3월 2일

6차 개정: 2019년 9월 1일

7차 개정: 2020년 5월 30일

□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법률 제17954호, 2021. 6. 23. 시행)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 서평, 학술에세이 등을 투고하는 등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적용하며,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시행) 제5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 ② 연구자는 제9조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연구 활동 본래의 이익, 즉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 간에 인적, 재정적, 학문적 형태 등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구성)

- ① 본 연구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구성 시기로부터 활동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8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출석자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아래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 4. 10. 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자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제1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1.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본 연구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본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1. 조사기관은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규정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본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①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 ②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③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④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예비조사)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증거자료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포함한 조사 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5) 기타 관련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단, 착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 ⑤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위원장은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예비조사 결과 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5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인 비율 30% 이상,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한 적이 있는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 결과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1) 제보의 내용 2) 조사 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7) 판정 결과가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 (판정)

-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연구소장은 판정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 투고 시 논문 저자가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발견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학술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3조 (조사 기록 보관 및 정보 공개)

- ①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판정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4조 (연구윤리준수확약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할 때 본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준수확약서에 반드시 서명한다.

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7호, 2024. 8. 21. 시행)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은 『생명연구』에 투고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이해충돌 관리)

연구자는 「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에 따라 이해충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제27조 (젠더혁신정책의 반영)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의 가이드라인(<https://gister.re.kr>)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별(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한 가지 성별만을 사용하는 연구,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 젠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연구인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생명연구』 제10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2.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54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3.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75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제정: 2008년 3월 2일
1차 개정: 2019년 2월 19일
2차 개정: 2019년 9월 1일
3차 개정: 2024년 12월 10일

<별첨> 연구윤리준수확약서

연구윤리준수확약서

본인은 『생명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였으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본 연구소가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둘째, 본인은 정직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고,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셋째, 본인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 『생명연구』 논문심사규정 □

제1조 (접수 및 관리)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원고마다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 투고 및 심사 현황, 출판 등 사후 관리를 일괄할 수 있는 원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조 (심사 송부)

논문의 심사는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인적사항 및 사사 표기 등 접수한 논문의 저자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삭제한 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제3조 (심사 대상 논문 선정)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접수된 논문마다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 대상 논문을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마다 투고 논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책임)

위촉된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서에서 논문 게재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보고서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수정할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친인척이거나, 동일 기관이거나, 공동연구자인 경우 등과 같이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제척 사유가 있음을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심사 일정)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본 연구소의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의견 및 결과를 기록한 심사보고서를 심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회송한다.

제7조 (심사 규정)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양식에 따라 논문을 평가한다.

1. 적합성(20점): 연구소 설립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함
2. 창의성(20점): 내용의 독창성과 참신함
3. 논리성(20점): 제목과 본문 내용의 일치, 주제의식의 명확성, 논증의 합리성 및 설득력, 언어적 표현의 명료성 및 적절성
4. 중요성(20점): 주제와 내용의 시사성,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5. 전문성(20점): 관련 문헌에 대한 숙지 및 이해도, 국문 및 외국어 요약문의 완성도

심사위원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 후 ‘게재가’(90-100점), ‘수정 후 게재가’(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70점 미만) 중 택일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게재가’ 판정이 아닌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요청 사항 및 종합평가 사유를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제8조 (게재 판정)

논문 게재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게재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9조 (심사 결과 보고 및 판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투고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를 심사자의 인적 사항 및 세부 평가점수를 삭제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평 사본과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게재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학술지 발행 전에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논문 수정 및 재심사)

제1항 (수정 후 게재가)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청 사항을 상세히 적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투고자는 수정 요청 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맞춰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논문을 검토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게재' 또는 '게재불가' 중 택일하여 최종 판정한다.

제2항 (수정 후 재심사)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청 사항을 상세히 적어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투고자가 수정 요청 사항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제출하는 경우 수정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수정 제의에 대한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제의를 거부할 경우 투고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별다른 사유 없이 수정 제의를 거부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재심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고, 해당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재심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생명연구』 제10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2.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25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3.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26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4.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44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5.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51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
6. 본 개정 규정은 『생명연구』 제73집 발간 시부터 적용된다.